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가합1102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D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주

변 론 종 결 2023. 4. 27.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G종중에게, 피고 D는 강원 홍천군 H 임야 158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6. 6. 13. 접수 제11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E, F은 강원

홍천군 H 임야 1583㎡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7. 24. 접수 제1522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2016. 5. 9. 10:00 개최된 G종중의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G종중(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은 I씨 22세손 J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의 종중원이다.

나. 이 사건 단체는 1991. 10. 30. 강원 홍천군 H 임야 15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10. 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단체는 2016. 6. 13. 피고 D에게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는 2017. 7. 24. 피고 E,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토지는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단체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데, 이 사건 단체의 규약에 의하면 종중재산의 처분은 총회의결사항이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2016. 5. 9. 개최된 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는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등 소집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총회결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의 임원들이 모여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총회결의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E, 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단체의 종중원으로서 총유물의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는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소집절차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단체의 일부 임원들이 모여 총회의사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총회결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 1)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체의 종중원들의 총유물이므로 이 사건 단체의 종원 개인에 불과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존행위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2)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 또한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단체의 결의 없이 원고들 개인이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등 참조).
-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단체의 소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의 규약 제2조는 "G 종중의 성인 남, 여로 구성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위 규약 제6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위 규약 제12조 제2항 제1, 3, 4호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선영 보호, 보존관리' 및 '종토 보존관리 사항'을 임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행사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단체의 총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관리 내지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민법 제276조 제1항 및 이 사건 단체의 규약 제6조,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단체의 총회 내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확인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또한 민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143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단체가 2016. 6. 13.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 D는 2017. 7. 24. 피고 E,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의 효력과 관련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다툼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이 사건 단체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인 피고들이지 원고들이나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들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결의에 관한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이 사건 단체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확인 판결은 이 사건 단체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 유효적절한 선결적인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회복할 수 없고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결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단체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이 사건 단체가 등기명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용호, 판사 김진하, 판사 류지선